

# 규장각 西庫의 운영과 서적 관리

강 문 식\*

- 1. 머리말
- 2. 西庫의 공간 운영
- 3. 西庫로의 서적 頒賜
- 4. 西庫 藏書의 활용
- 5. 西庫 藏書의 관리
- 6. 맺음말

## 1. 머리말

西庫는 규장각의 도서 소장처 중 하나로서 조선본 서적, 즉 조선에서 편찬·간행된 서적을 보관하는 곳이었다.<sup>1)</sup> 원래 ‘西庫’라는 명칭은 중심 건물의 서쪽에 있는 收藏庫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서, 규장각 외에도 여러 곳에 西庫가 존재하였다.<sup>2)</sup> 규장각 西庫 역시 중심 건물인 宙合樓의 서북쪽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西庫라고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규장각의 西庫는 ‘西序’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sup>3)</sup> 西序는 『書經』의 “赤刀大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正祖實錄』 권2, 정조 즉위년(1776) 9월 25일(계사); 권11, 정조 5년(1781) 2월 13일(병진).

2) 연대기에서 확인되는 규장각 이외의 西庫 사례로는 宗廟 · 大報壇 · 藝文館 · 漢城府 등에 설치된 西庫가 있는데, 이를 西庫에서는 각 기관에서 소장하던 각종 文籍과 印章 · 악기 등을 보관하였다. 또,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얼음을 보관하는 西冰庫도 西庫로 지칭되는 경우가 있었다.

3) 『正祖實錄』 권11, 정조 5년(1781) 6월 29일(경자).

訓弘璧琬琰 在西序 大玉夷玉天球河圖 在東序”에서<sup>4)</sup> 나온 말로서, 先王의 訓誥 · 大訓을 보관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규장각의 西庫 역시 국가와 왕실의 귀중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西序라는 별칭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西庫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西庫 소장 도서들을 정리한 書目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재철은 조선시대 도서 분류 방식을 고찰하면서 『西序書目草本』을 검토한 바 있으며,<sup>5)</sup> 김윤식은 『西序書目草本』과 『鏤板考』의 내용을 비교 ·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sup>6)</sup> 또, 신용하는 규장각 장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西庫藏書錄』과 『西序書目』의 편년을 규정하였다.<sup>7)</sup>

西庫의 書目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연구 · 정리한 이는 남권희이다. 남권희는 『正祖實錄』 · 『內閣日曆』 등의 기록들을 통해 西庫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했으며, 이어 국내 · 외에 현전하는 西庫 관련 書目들을 모두 망라하여 각각의 편찬연대와 현전 경위, 서지적 ·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西庫 書目들의 분류체계, 장서량의 변천, 書目 수록 도서들의 간행방식별 · 주제별 특징 및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sup>8)</sup>

이상과 같이 西庫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은 書目에 대한 고찰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西庫의 운영 실태를 검토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이는 아마도 자료적인 뒷받침이 여의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西庫가 규장각 내의 주요 藏書 기구 중 하나로서 자신들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西庫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는 것은 규장각 역사 연구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 기존 西庫 書目類 연구의 성과들도 西庫 운영의 실상과 연결되어 검토될 때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內閣日曆』 · 『日省錄』 · 『承政院日記』 등의 연대기 자료에 등장하는 西庫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장각 西庫의 구체적인

4) 『書經』 周書, 「顧命」 제19장.

5) 李載喆, 1976 「韓國書誌目錄學史의 研究: 朝鮮朝의 四部分類法考」 『성곡논총』 7.

6) 金允植, 1978 「鏤板考의 書誌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慎鏞廬, 1981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 『규장각』 5.

8) 남권희, 1983 「奎章閣 西庫와 그 書目分析」 『규장각』 7.

운영 실태를 공간 운영, 서적 반사, 장서의 활용과 관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西庫의 공간 운영

西庫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정조실록』 1776년(정조 즉위) 9월의 규장각 창설 기사에 西庫가 東本圖籍, 즉 조선에서 간행된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언급되고 있으므로,<sup>9)</sup> 규장각 창설 초기에 이미 西庫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치 초기 西庫의 대략적인 공간 구성은 初草本 『奎章閣志』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초초본 『규장각지』 下篇의 「藏書」 조에는 규장각 藏書堂樓의 서가 배치 규정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대한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뒤에 奉謨堂의 규정이 별도로 나오는 점, 經·史·子·集部의 서적을 甲·乙·丙·丁으로 구분한 것이 완성본 『규장각지』에 수록된 皆有窩·西庫의 규정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皆有窩와 西庫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가 배치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西庫 내 동·서·북쪽 3면의 벽에 서가를 설치하며, 北壁의 서가에는 經部와 史部의 서적, 東壁의 서가에는 子部 서적, 西壁의 서가에는 集部 서적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經部 서가는 甲庫, 史部 서가는 乙庫, 子部 서가는 丙庫, 集部 서가는 丁庫로 명명하고, 각 서가마다 해당되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도록 하였다.<sup>10)</sup>

기존 연구에 따르면, 1781년(정조 5)의 시점에서 중국본 소장처인 閣古觀·皆有窩의 장서량은 약 20,000책인 반면 西庫의 장서량은 약 10,000책 정도였다.<sup>11)</sup>

9) 『正祖實錄』 권2, 정조 즉위년(1776) 9월 25일(계사).

10) 『奎章閣志』(奎734) 下篇, 「書策-藏書」 “先就藏書堂樓 爲書架於北壁下 層之高廣 隨宜闊狹 或四架或六架 南向列峙 所以藏經史者 而左經右史 又爲書架於東壁下 制如北壁之架 西向列峙 所以藏子者也 又爲書架於西壁下 制如東壁之架 東向列峙 所以藏集者也.”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奎章閣志』(영인본), 243면]

11) 남권희, 앞의 논문, 179면.

당시의 西庫는 현재 『東闕圖』에 보이는 西庫의 북쪽에 위치한 건물에 있었는데, 閣古觀 · 皆有窩와 비교해 보면 西庫의 면적이 閣古觀 · 皆有窩보다 약간 넓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소장처의 장서량 차이는 閣古觀 · 皆有窩에 비해 西庫에 상대적으로 공간적 여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규장각에 속한 다른 서적 소장처의 장서들 중 일부를 西庫로 옮겨 보관하도록 했던 사례들은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1781년 3월에 鄭民始는 皆有窩의 장서 정리 상태가 무질서하고 중복 소장된 책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정리하여 皆有窩에서는 서적을 한 질씩만 소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책들은 西庫 및 다른 곳으로 이관할 것을 건의하였다.<sup>12)</sup> 또 1785년 10월에 정조는 奉謨堂 소장 자료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奉謨堂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西庫나 摘文院에서 소장하는 것이 더 적합한 자료들을抄出하여 각각 이관하도록 하였다.<sup>13)</sup> 西庫에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도서 이관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91년(정조 15)에는 西庫의 移建이 추진되었다. 西庫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해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소장 도서들이 蟲害를 입기 쉽다는 점이 이전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西庫 남쪽의 守直廳 자리에 大廳 16칸, 左右夾室 각 2칸 규모의 西庫를 새로 지었으며, 守直廳은 원래의 서고 위치로 옮기도록 하였다.<sup>14)</sup> 西庫 신축 공역은 1791년 겨울에 착수하여 이듬해(1792) 3월에 완료되었다. 공역 기간 동안 西庫의 장서들은 書香閣으로 옮겨 보

12)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3월 29일 “民始曰 皆有窩所藏冊子 散亂無統 且多疊有者 一番點檢 各具一帙 分類貯置 其中疊有者 盡爲抄出 別置於西庫及他處 似好。”

13) 『內閣日曆』 정조 9년(1785) 10월 20일 “上曰 昨因日暮 御筆木刻石刻 皆未詳細照數 奉謨堂所奉 亦皆散置不齊云 卽等進詣秩秩整頓 可奉奉謨堂者 奉安于堂中內櫺外架 可奉內摘文院者 奉置于摘文院樓上 可奉西庫者 分藏于西庫 詳載形止案 各各齊奉 毋致錯雜 好矣。” 남권희 교수는 西庫 書目類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규장각 내 다른 소장처의 도서들이 서고로 이관된 사례들을 지적한 바 있다(남권희, 앞의 논문, 180면). 특히 남 교수는 봉모당에서 西庫로 옮겨진 도서 87책이 있음을 언급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1785년의 봉모당 서적 정리 과정에서 이관된 책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14) 남권희, 앞의 논문, 130-133면.

관하다가 새 건물 완성 후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다시 西庫로 이관했으며, 서호수·서유구 등이 서적 이관의 일을 감독하였다.<sup>15)</sup>

西庫를 이전하면서 西庫의 장서 분류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즉, 이전에 經·史·子·集의 4부로만 분류하던 것에서 ‘御定類’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내각일력』에서는 이것이 馬端臨의 『文獻通考-經籍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색이 다른 書籤을 붙여서 각 부의 서적들을 구분했는데, 御定書에는 진홍색, 經部 서적에는 분홍색, 史部 서적에는 청색, 子部 서적에는 황색, 집부 서적에는 白色의 첨지를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西庫 장서를 보관하는 서가의 총수는 45개였다.<sup>16)</sup> 이상과 같은 장서 체계의 변화는 西庫 소장 도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1792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西序書目籤錄』에 잘 반영되었다.<sup>17)</sup>

西庫 書目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西庫 소장 도서는 1781년(정조 5)에 약 10,000여 책에서 1790년에 20,194책으로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1792년에 25,207 책, 1795~1802년에 27,798책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한다.<sup>18)</sup> 이와 같은 증가 추세에 따라 정조대 말에 이르면 西庫 역시 장서 공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798년(정조 22) 4월에 정조는 奉謨堂·皆有窯·西庫 등의 奉審과 曝曬에 관한 구두 전교를 내리면서, 西庫는 장소가 협착하므로 서적들을 書香閣으로 옮겨서 포쇄한 다음 서고로 돌려보낼 것을 지시하였다.<sup>19)</sup> 이를 통해 西庫에 당장

15) 『內閣日曆』 정조 16년(1792) 3월 23일 “自冬跨春 役始告訖 左右夾室各二間 大廳十六間  
面東 而頗宏敞 當改構也 書皆移置於書香閣 至是還貯于西庫 上命檢校直提學徐浩修·待  
敎徐有榘 監其役 自是月十五日始正部次 至二十三日而畢.”

16) 『內閣日曆』 정조 16년(1792) 3월 23일 “略倣馬氏經籍考 其目有四 曰御定類也 以眞紅籤  
標之 曰經類也 以粉紅籤標之 曰史類也 以青籤標之 曰子類也 以黃籤標之 曰集類也 以白  
籤標之 大凡四十五架.”

17) 『西序書目籤錄』에는 御定書 외에 御製御筆類와 璿譜璿牒類도 포함되어 있으며, 御製御筆  
類·璿譜璿牒類·御定書의 첨지를 ‘深紅籤’, 經部 서적의 첨지를 ‘紅籤’으로 표시하였다.  
또 45개의 서가 외에 좌우협실에 보관된 서적을 정리한 「別置目錄」이 있는데, 이 서적들은  
①西庫舊件襍秩 ②內下別置秩 ③宙合樓下移來秩 ④不秩 ⑤蠹破不用秩 등으로 구분되  
어 있다. 『西序書目籤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권희, 앞의 논문, 144-150면을 참조.

18) 남권희, 앞의 논문, 179-181면.

藏書 공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타의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1799년 10월에 이르면 西庫의 서적들 중 일부를 宜春門의 傍舍로 이전하게 된다.<sup>20)</sup> 그리고 약 6개월 후인 1800년 4월에도 西庫 서적 중 新刊 御定書들을 宜春門 傍舍로 이관하였다.<sup>21)</sup> 즉, 지속적인 소장 도서의 증가로 더 이상 西庫 내의 장서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西庫 밖에 별도의 서적 소장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西庫의 공간이 부족해 질 때마다 일부 서적들을 계속해서 宜春門 傍舍(宜春門庫)로 옮겨 보관하였다. 따라서 1799년 이후의 西庫는 원래의 西庫 건물과 別庫의 역할을 담당한 宜春門庫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東闕圖』에 나타난 西庫와 宜春門庫

왼쪽 하단의 원 안에 있는 건물이 西庫이며, 오른쪽 하단의 원 안에 있는 문이 宜春門이고 그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 宜春門 傍舍(宜春門庫)이다.

19) 『內閣日曆』 정조 22년(1798) 4월 15일 “以司卷 口傳下敎曰 (중략) 西庫書冊 多有新印者 頻頻曝曬 西庫狹窄 難於容旋 則書香閣點火 從便曝曬後 還爲入置 兩待敎句管 而別定書吏 使之專當舉行.”

20) 『內閣日曆』 정조 23년(1799) 10월 4일 “沈象奎金近淳李存秀 以西庫冊移峙宜春門傍舍事 因下敎進去西庫.”; 10월 5일 “沈象奎金近淳李存秀 以冊子移峙事 西庫進去.”

21) 『內閣日曆』 정조 24년(1800) 4월 26일 “西庫所奉御定新印冊子 移奉于宜春門內兩庫時 沈象奎金近淳李存秀進去.”

### 3. 西庫로의 서적 頒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西庫의 장서량은 1781년(정조 5)에 약 10,000여 책에서 1790년에 20,194책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1792년에 25,207책, 1795~1802년에 27,798책 등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1781년에서 1790년 사이의 서적 증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고, 1790~1792년의 장서량 증가는 宙合樓 소장 도서 1,987책이 西庫로 이관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였다.<sup>22)</sup> 하지만 가장 중요한 藏書 증가의 요인은 새로 편찬·간행된 서적들이 계속해서 西庫에 頒賜·소장되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내각일력』이나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에는 정조대 이후 국가에서 간행한 서적들을 국가기관 및 개인에게 頒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서적이 반사된 국가기관에는 西庫를 비롯한 규장각의 도서 소장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西庫에 어떤 서적들이 새로 수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각일력』·『일성록』 등의 연대기 자료에 기록된, 정조대 이후 편찬·간행 서적의 西庫 반사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西庫에 반사된 도서

날짜	반사 자료	西庫 반사 내역		타 기관 반사 내역 (전수/ 개인 반사는 제외)	전거
		수량 (건)	세부 내역		
1781.03.10.	文臣講製節目 · 追節目	10		內入 5, 院上 5, 承 · 弘 · 議 · 禮 · 春 · 成 · 校 · 承文 院 각1, 五史庫 각1	內 · 日 · 承
1781.04.27.	隸陣總方	15	壯紙 5건, 白紙 10건	內入 30, 院上 2, 外奎 1, 五史庫 각1, 宣傳官廳 1, 該廳 28	內
1781.05.01.	館閣講義	10	壯紙 5건, 白紙 5건	進上 10, 內閣 4, 弘 1, 外 奎 · 外閣 · 春 · 承 · 堂后 각1, 四史庫 각1, 成 · 四 學 합5	內

22) 남권희, 앞의 논문, 180면.

1781.08.22.	御筆作帖	1		奉 1	内
1782.08.15.	諭京畿民人等綸音	1		擒·外奎·赤·五·太 각1	内
1782.08.15.	諭海西綸音	2		外奎 2, 擒·赤·太·五·校 각1	内
1782.11.05.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	2	1건 봉안 不粧 1건은 기소장 『京 畿綸音』에 合付	奎·外奎·鼎·太·赤· 擒 각1	内
1782.11.26.	國朝寶鑑	4	貼冊紙(別編 포함) 1건, 卷冊紙(別編 포함) 1건, 卷冊紙 1건, 白紙 1건	內入 15, 喜雨亭·外奎· 內閣·承·弘·成·禮 각1, 五史庫 각1	内
1782.11.29.	御製世宗綸音	3		奎 1, 內閣 2, 五史庫 각1, 外奎 1	内
1783.01.18.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1	壯紙 1건	承·堂后·弘·備·外 奎·藝 각1, 四史庫 각1	内
1783.02.12.	武藝出身廳節目	2	印帖	內入 5, 內閣 1	内
1783.03.12.	國朝寶鑑 (추가 반사)	68	白綿紙 50건, 集字序文 白綿紙 1건, 白紙 17건	內入 18, 觀物軒 9, 內閣 4, 外奎 2	内
1783.05.25.	南奉朝賀文集	30	白綿紙, 白紙	內入 39, 內閣 2, 外奎 2, 太·赤·五·春·弘·校 각1, 本家 2	内
1783.10.11.	湖南綸音	5	白綿紙粧潢 1건 不粧白綿紙 4건은 기소 장 윤음과 合冊	內入 40, 四史庫 각1, 外 奎·宙·弘·承·堂后 각1	内·日
1783.10.24.	諭原春道嶺東嶺 西大小土民綸音	2		宙·承·弘·備 각1, 五史 庫 각1	内·日
1783.11.02.	諭咸鏡道南關北 關大小土民綸音	1	白綿紙粧潢	宙·外奎·承·弘·備· 戶·宣惠廳 각1, 五史庫 각1	内·日
1784.01.20.	畿湖別賑資綸音	3	白綿紙粧潢	承·春·五·赤·太· 備·弘·成 각1, 內閣 1	内
1784.02.02.	敦孝錄	4	別壯紙 1건, 壮紙 3건	內入 9, 外奎·內閣 각1	内·日
1784.03.16.	敦孝錄 (추가 인출)	4		內入 5, 弘·五·太·赤 각1	内
1784.06.12.	奎章閣志	91	白綿紙 15건, 簡壯紙 3 건, 冊紙 5건, 白綿紙 50 건, 天銀紙 8건, 不剪紙	奎 1, 外奎 2, 喜雨亭 1, 內入 118, 內閣 4, 弘 2, 承·堂后·檢書廳·司卷	内·日

			10권	廳·領籤廳·守直間·監書廳·司戶軒·外閣 각1, 五史庫 각1	
1784.06.12.	弘文館志	72	白綿紙 70권, 加印 2권	奎 1, 外奎 2, 喜雨亭 1, 內入 11, 內閣 2, 弘 10, 六曹 각1, 承·外閣·堂后·書房色·掖庭署·傳命廳·漢·憲·諫·成 각1, 五史庫 각1	내·日
1784.07.09.	貽燕綸音	10	白綿紙	內入 15, 奎 1, 外閣 2, 摘 3, 五史庫 각1, 承·弘·堂后 각1	내
1784.08.05.	冊禮日施惠綸音	2		內入 15, 奎·外奎 각1, 五史庫 각1, 內閣 2, 承·堂后·弘·成·侍·翊衛司·藝·兵·五營門·均役廳·戶·備·議·中樞府·忠勤府·工·吏·司僕·掌樂院·司饔院·軍器寺·校·繕工監·觀象監·典設司·尚衣院·內醫院·惠民署·內需司·內苑 각1	내
1784.09.29.	褒忠綸音	10	白綿紙 5권, 白紙 5권	內入 20, 外奎 2, 五史庫 각1, 內閣 2, 弘·校 각1	내
1784.11.24.	冊封慶龍虎榜目	5	白綿紙	內入 20, 內閣 2, 外閣·外奎·弘·承·侍 각1, 五史庫 각1	내
1785.05.25.	飭諭武臣綸音	5		奎·外奎·承·弘 각1, 四史庫 각1	내
1785.08.09.	宮園儀	10	卷冊紙	景慕宮·永祐園 각1, 內入 20, 內閣 2, 外奎·承·弘·成·議·吏·禮·戶·兵 각1, 五史庫 각1	내
1785.09.12.	大典通編	15	啓辭紙 2권, 白綿紙 5권, 大簡壯紙 1권, 貼冊紙 2권, 白紙 5권	內入 99, 奎 1, 摘 3, 檢書廳 1, 五史庫 각1, 弘·承·侍·成·議·備·校·義禁府 각1, 六曹 각1, 漢城五部 각1	내
1785.09.27.	兵學通	37	毛面紙 2권, 簡壯紙 2권, 白綿紙 8권, 壯紙 10권,	내入 151, 外奎·摘·弘 각2, 統制營·南漢山城·	내

			天銀紙 20건, 白紙 5건	北漢山城·承·檢書廳·外閣·侍·桂坊·備·議·成·京畿監營·兵·內兵曹·糧餉廳·都總府·龍虎營·五軍門·扈衛廳·宣傳官廳·禁軍廳·能麼兒廳·金虎門·弘化門·建陽門·局出身廳·壯勇衛廳·忠壯衛廳·內司僕·別軍職廳·武兼廳·四所衛將廳·分軍所·訓練院·守門將廳·軍器寺·習讀廳·左右捕廳·東營·南營·西營·北營·廣智營·集春營 각1, 五史庫 각1	
1785.11.07.	永陵碑文印本	1	粧帖	內入 12, 奎·外奎·摘·奉 각1	內
1786.01.04.	列朝御製御筆·東南廟碑文印本	1	貼冊	兩廟 2, 內入 7, 奎·外奎·摘·弘·侍·赤·太·五 각1	內·日
1786.04.25.	羹牆錄	7	貼冊紙 1건, 卷冊紙 2건, 白紙 4건	內入 11, 奎·外奎·承 각 1, 弘 6, 侍 9, 內閣 4, 成 2, 五史庫 각1	內·日·承
1787.05.22.	文苑齋譏	55	白綿紙 1건, 冊紙 1건, 唐紙 1건, 毛面紙 1건, 稿精紙 1건, 白紙 50건	內入 19, 外奎·摘·內閣·五·赤·太·弘·藝·成 각1	日
1787.06.13.	安窩集	20	毛面紙 1건, 白綿紙 5건, 敦厚紙 2건, 慶冊紙 2건, 白紙 10건	內入 60, 內閣 2, 外奎·弘·太·赤·五·春 각1	內·日·承
1788.04.16.	表忠綸音	1	粧績楮注紙	內入 30, 宙·外奎·內閣·外閣·弘·禮·忠勤府·承·成 각1, 五史庫 각1	內·日·承
1788.10.08.	諭北道綸音	12	白紙不粧 9건, 別印 3건	內入 23, 外奎 2, 五史庫 각1, 弘·備·外閣·承·成 각1	內·日·承
1789.05.22.	壽齋集	30	冊紙 5건, 毛面紙 1건, 楮注紙 3건, 壯紙 2건, 白紙 21건	外奎 1, 五史庫 각1, 內閣 2, 弘 1	內
1790.01.29.	御製御筆鎮安大君碑文印本帖	18		奎·外奎·弘 각1, 內閣 2, 五史庫 각1	內

1790.05.02.	御定武藝通志	10	毛面紙 2권, 粉唐紙 3권, 啓辭紙 1권, 冊紙 1권, 慶紙 1권, 别白紙 1권, 白紙 1권	宙·外奎 각1, 內閣 2, 五 史庫 각1	內
1790.06.04.	江漢集	6	別冊紙 2권, 白綿紙 1권, 白紙 3권	內入 10, 外奎·內閣 각1, 五史庫 각1	內
1791.04.16.	釋王寺碑文作帖	1		宙 5, 東二樓·外奎·本 院·赤·太·五·弘 각1	內
1791.04.26.	林忠愍公實記	5	壯紙 2권, 寧邊紙 1권, 粉唐紙 2권	五史庫 각1, 外奎·弘·成 각1, 內閣 2, 三學士家 각1	內
1791.06.02.	訥齋集	10	毛面紙 1권, 粉唐紙 1권, 啓辭紙 1권, 白綿紙 2권, 白紙 5권	內入 6, 內閣 3, 外奎·春 ·五·太·赤·弘·尊 각1	內
1791.07.05.	端廟御製及子規 樓記文樑文作帖	2		外奎·春·擒 각1, 三史庫 각1(3곳이 어딘지는 불분 명)	內
1791.08.19.	訥齋集 (完營印進)	10	壯紙	內入 20, 內閣 3, 外閣· 弘 각1	內
1791.10.24.	梁訥齋外裔譜	1		內入 1, 內閣 1	內
1792.01.04.	瓊林聞喜錄	33	粉唐紙 3권, 白紙 30권	內入 49, 外奎 1, 五史庫 각1, 弘·成 각2, 四學 각 1, 承·堂后 각1	內
1792.04.03.	車五山集	14	毛面紙 2권, 壯紙 2권, 白紙 10권	內入 9, 外奎 1, 春·赤· 太·五 각1, 內閣 2	內·日
1793.10.21.	壯勇外營步軍等 節目	10	壯紙, 白紙(內閣加印)	內入 8, 壯勇營·本司·內 營·外營 각3, 內閣·外 閣·弘·春·禿城山城· 承·兵·五營·坼營 각1, 四史庫 각1, 外營各廳 각1 / 亂定-內·外營 分藏 30 (外營加印)	內·日·承
1793.11.06	太常祭品圖式· 菓果醢菹圖式	1		內閣·弘·禮·五史庫 각 1, 諸處享所(수량 미상)	內·日·承
1794.02.16.	三經四書 (外閣新印)	47	毛面紙 1권, 冊壯紙 1권, 水原行宮禮單紙 20권, 白紙 25권	宙 1, 內入 36, 弘 8, 侍 15, 內閣 2, 五·太·赤· 外奎·外閣·成 각1, 陶山 書院·石潭書院·大老祠 각1	內·日

1794.02.17.	奎華名選	8	粉唐紙 4권, 壯紙 2권, 天銀紙 2권	內入 12, 外奎·五·太·赤·鼎 각1	內·日
1794.04.27.	耽羅賓興錄	3		內入 2, 五史庫 각1, 全羅監營·全州鄉校·濟州三邑鄉校 각1, 內閣·外閣·外奎·弘·成 각1	內·日·承
1794.05.22.	咸興永興兩本宮 新印儀式	2	白紙	內入 9, 奉·宙·奉常寺·禮·內閣·弘·內需司·本道監營·咸興府·永興府 각1, 五史庫 각1	日
1794.09.24.	御定人瑞錄	48	毛面紙黃衣 10권, 粉唐紙青衣 8권, 白紙 25권, 冊紙 5권	內入 88, 耆老所 1, 宙·內閣·外奎 각2, 承·弘·春·成·漢·赤·五·太·八道·三都 각1	內·日
1794.10.15.	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陽靈巖珍島等邑民人慰諭 蠲恤綸音	2	壯紙 1권, 白紙 1권	外奎 1, 內閣 3, 五史庫 각1	內·日
1794.12.24.	關東賓興錄	8	雪白紙 5권, 白紙 3권	內入 18, 外奎 2	內
1794.12.25.	御定朱書百選	250	白綿紙 100권, 天銀紙 35권, 完白紙 20권, 不翦低 15권, 賀白紙 80권	內入 139, 頒賜次內入 33, 水原 54, 內閣 2, 外奎·外閣·成 각1, 五史庫 각1	內·日
1795. 윤2.04.	乙卯司馬榜	1	壯紙	內入 35, 內閣·外閣·弘·侍·南宮·西樓·承·成·外奎·華城行宮 각1, 五史庫 각1	內·日
1795.04.01.	樂學軌範	1		內閣 1	內
1795.04.18.	正始文程	17	毛面紙 2권, 粉唐紙 2권, 京造紙 3권, 白紙 10권	內入 63, 內閣 2, 承·弘·成·四學·禮·外奎·外閣·水原鄉校·外帑庫 각1, 五史庫 각1, 八道書院 각1	日
1795.05.09.	御製尙忠旅武碑本	6	作冊 1권, 作帖 1권, 不粧 4권	內入 14, 外奎 2, 內閣·弘·成 각1, 五史庫 각1	內
1795.07.09.	協吉通義	17	粉唐紙 1권, 毛面紙 1권, 天銀紙 15권	五史庫 각1, 外奎·內閣·外閣·弘 각1	內
1795.07.13.	洗心臺賡載軸	10	白紙 5권, 京造紙 2권, 毛面紙 2권, 粉唐紙 1권	五史庫 각1, 內閣·外閣 각1 (內入-臨時取稟)	內·日

1795.09.14.	李忠武公全書	10		五史庫 각1, 弘·成 각1	内·日·承
1795.09.15.	慈宮周甲志喜賡 載軸合編	3	白紙	内入 22, 内閣·承·弘·成·外閣·外奎 각1, 五史庫 각1	日
1795.10.27.	靈槐臺碑印本	2		内入 10, 宙 2, 奉·華城行宮·顯隆園齋室·景慕宮齋室·外奎·內閣·春·赤·太·五·尊 각1	内·日·承
1795.11.01.	寶鑑纂輯廳軸合 編	7	粉唐紙 2건, 毛面紙 2건, 白紙 3건	宙 2, 内閣·外閣·外奎·弘·承·成 각1, 五史庫 각1	内·日·承
1795.11.01.	苑賞花軸合編	7	粉唐紙 2건, 毛面紙 2건, 白紙 3건	宙 2, 内閣·外閣·外奎·弘·承·成 각1, 五史庫 각1	内·日·承
1795.11.30.	李忠武公全書	10	壯紙 3건, 白紙 7건	内入 59, 内閣·弘·成 각1, 五史庫 각1, 順天忠愍祠·海南忠武祠·南海忠烈祠·統營忠烈祠·牙山顯忠祠·康津遺祠·巨濟遺廟·咸平月山祠·井邑遺愛祠·溫陽忠孝堂·鑿梁草廟 각1	内·日
1796.09.21.	咸興永興兩本宮 儀式	15	壯紙 5건, 白紙 10건	内入 19, 奎·奉·景慕宮齋室 각1, 内閣 2, 承·弘·禮·備·内司·華城府 각1	内·日
1796.03.24.	整理儀軌	10	唐紙 2건, 壮紙 4건, 白紙 4건	顯隆園齋室·景慕宮齋室·華城行宮 각1, 内閣·外奎·整理所·承·弘·侍·備·壯勇營·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總戎廳·戶·禮·兵·京畿監營·華城府·廣州府·始興縣·果川縣 각1, 五史庫 각1	内·日·承
1797.06.02.	鄉禮合編	30		内入 50, 華城行宮 5, 内閣 10, 弘 2, 侍 5, 漢 2, 外奎·五史庫·承·堂后·外閣·成·四學·議·備·六曹·五部各坊·八道監營·四都留守營·330州縣·華城52面 각1, 전국 鄉校·書院 각1	内·日·承

1797. 8. 6. 12.	御定陸奏約選	100		內入 330, 宙 2, 內閣 3, 外閣·弘 2, 侍 3, 外奎·春·赤·五·太·成 2, 咎 1	內·日
1797. 07. 20.	五倫行實	60		宙 1, 華城行宮 10, 內閣 3, 弘·侍 2, 外奎·五史庫·承·外閣·成·四學·議·備·六曹·漢·五部·八道監營·四都留守營·330州縣 2, 全國鄉校 2	內·日·承
1798. 07. 22.	杜律分韻	50		內閣 3, 弘·侍 2, 尊·外奎 2, 五史庫 2	日
1798. 07. 22.	陸律分韻	50		內閣 3, 弘·侍 2, 尊·外奎 2, 五史庫 2	日
1798. 09. 02.	御定五經百篇	30		華城行宮 3, 內閣·弘·侍 2, 外奎·外閣·成·五史庫 2, 道東書院·瀋溪書院·筆嚴書院·道峯書院·陶山書院·玉山書院·紹賢書院·坡山書院·遜巖書院·華陽書院·興巖書院·潘溪書院·義巖書院·德川書院·東洛書院 2	內·日
1798. 10. 29.	春秋	10	壯紙	華城行宮 2, 外奎·內閣·外閣·弘·春·侍 2	日
1798. 12. 01.	新印勸農政來農書綸音	10		內入 230, 華城行宮 5, 外奎·五史庫·內閣·承·弘·侍外閣·議·備·漢·六曹·五部 2, 成 7, 四學 2, 五部各坊契 108, 八道監營·兵營·水營·330州縣 2, 華城府 20, 三都 2	內·日·承
1799. 03. 28.	太學恩杯詩集	13		宙·外奎·內閣·外閣·承·弘·侍·鑄字所·五史庫·成·四學·禮 2	內·日·承
1799. 10. 03.	雅頌	50		宙 1, 內閣 5, 弘 8, 侍 6, 華城行宮 3, 外奎·五史庫·外閣·尊 2, 成均館月講所 5, 東上齋·西上齋·四學 2	日

1799.11.15.	春秋 (翻刻新印)	27		華城行宮 2, 内閣 2, 外奎·外閣·弘·侍·春 각 1	内·日
1799.12.11.	濟衆新編	31		内閣 1, 内局 1, 内局三廳 각 1, 華城行宮·鄉校·留守營·貳衙 각 1	内·日
1799.12.28.	御定杜陸千選	50		宙 1, 華城行宮 3, 内閣·弘·侍·等 각 2, 外奎·五史庫·外閣 각 1, 書院 14 處 각 1	内·日
1800. 윤4.03.	關西賓興錄	3	稍厚白紙	内入 11, 宙·内閣·外閣·弘·侍·春·成·等·外奎·江華 각 1, 四史庫 각 1	内·日
1801.02.09.	健陵誌文作帖	4		華寧殿·健陵·宙·内閣 각 1, 五史庫 각 1	日·承
1801.05.22.	梁大司馬實記	105	壯紙 30건, 白紙 75건	内入 11, 内閣 2, 外閣·外奎·弘·等 각 1, 五史庫 각 1	内
1801.06.15.	小學	43	壯紙 1건, 册紙 2건, 白紙 40건	内入 38, 弘·成 각 1	内
1802.02.28.	關北賓興錄	4	白紙 4건	内入 17, 宙·内閣·外閣·外奎·弘·成·等·五史庫·咸鏡監營 각 1	内
1805.10.16.	大學類義	84	各色紙	内入 25, 五史庫 각 1, 外奎 3, 内閣·外閣·弘·成·侍 각 1	内·日
1814.06.14.	正宗大王御製列聖御製合附本	1		奉·文獻閣·外奎·内閣·弘·侍 각 1, 五史庫 각 1	内·日·承
1822. 윤3.07.	四書三經大全	20	壯紙 6건, 粉唐紙 2건, 毛面紙 2건, 白紙 10건	없음	内
1822. 윤3.07.	四書三經諺解	10	壯紙 5건, 白紙 5건	없음	内
1827.09.10.	整禮儀軌	1	整理字	大殿 1, 中宮殿 1, 内入 2, 奎·禮 각 1	内·日·承
1828.05.10.	進爵整禮儀軌	1		内閣 3	承
1836.05.19.	純宗大王御製翼宗大王御製列聖御製合附本	1		奉·文獻閣·外奎·内閣·弘·藏書閣 각 1, 五史庫 각 1	内·日·承

1837.08.27.	列聖誌狀	1		奉 3, 宙·內閣·外奎·弘·藏書閣 각1, 五史庫 각1	内·日·承
1850.03.22.	憲宗大王御製列 聖御製合附本	1		奉·文獻閣·外奎·內 閣·弘·藏書閣·각1, 五 史庫 각1	内·承
1850.06.15.	列聖誌狀	1		奉 3, 宙·內閣·外奎· 弘·藏書閣 각1, 五史庫 각1	内·日·承
1852.11.02.	文苑舡叢續編	1		外奎·五·赤·太·內 閣·弘·藝·成·藏書閣 각1 / 기관·개인 반사 후 잔여분 内入	内·日·承
1859.07.16.	國語	1		外奎·五·赤·太·內 閣·弘·藝·成·藏書閣 각1 / 기관·개인 반사 후 잔여분 82건 内入	内·日
1865.04.11.	哲宗大王御製列 聖御製合附本	1		奉·文獻閣·外奎·內 閣·弘·藏書閣 각1, 五史 庫 각1	内·日·承
1865.07.18.	列聖誌狀	1		奉 3, 宙·內閣·外奎·弘 ·藏書閣 각1, 五史庫 각1	内·日·承
1890.03.16.	丁丑丁亥二秩儀 軌	3		東朝內入 1, 内入 28, 奎 ·侍·春·四史庫 各1	日
총계		1,955			
<p>[전거] 内: 내각일력, 日: 일성록, 承: 승정원일기  [기관 약칭] 奎: 규장각, 外奎: 외규장각, 奉: 봉모당, 宙: 주합루, 摘: 이문원, 議: 의정부, 備: 비변 사, 承: 승정원, 弘: 홍문관, 侍: 사장원, 成: 성균관, 校: 교서관, 藝: 예문관, 春: 춘추관, 吏: 이조, 戶: 호조, 禮: 예조, 兵: 병조, 刑: 형조, 工: 공조, 漢: 한성부, 憲: 사헌부, 諫: 사간원, 尊: 존경각, 鼎: 정족산사고, 赤: 적상산사고, 五: 오대산사고, 太: 태백산사고, 四史庫: 외사고 4곳, 五史庫: 춘추 관과 외사고 4곳 </p>					

<표 1>을 통해 1781년(정조 5)부터 1890년(고종 27) 사이에 105종 1,955건의 서적이 西庫에 반사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1>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반사 서적 중에 御製·御筆類, 각종 縱音, 『璿源譜略』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왕·왕실의 기록물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자료들은 주로 宙奎樓 1층이나 奉謨堂에 소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대기의 반사 내역을 검토

한 결과 봉모당뿐만 아니라 西庫에도 반사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書目 연구에서 179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 『西序書目籤錄』에는 이전 단계의 『西庫藏書錄』에서는 보이지 않는 ‘御製御筆類·璿譜璿牒類·御定類’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御製·御筆·繪音 등이 西庫로 계속 반사되면서 나타난 소장 도서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西庫로 반사된 서적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점도 특이하다. <표 1>을 보면, 총 105회의 서적 반사 중에서 1건만 반사된 경우는 24회(22.9%)이고 나머지 81회는 2건 이상이 반사되었다. 또 10건 이상이 반사된 경우는 50회(47.6%)에 달하며, 이 중에서 20~49건이 반사된 것이 13회, 50건 이상 반사된 경우도 13회에 달한다. 서적이 반사된 시기를 정조대로 좁혀보면 이런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정조대 총 86회의 서적 반사 중에서 西庫에 1건만 반사된 경우는 13회(15.1%)에 불과한 반면, 10건 이상 반사된 경우는 45회(52.3%)이며, 이 중 20~49건이 반사된 사례와 50건 이상 반사된 사례가 각각 11회씩 나타난다. 반면, 현종대 이후에는 총 9회의 반사 사례 중 8회가 1건만 반사되었고, 10건 이상 반사 사례는 전무하여 앞선 시기와 대조를 보인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왕대별 西庫 서적반사 현황

왕대 \ 반사건수	1건	2~9건	10~19건	20~49건	50건 이상	계
정조대	13	28	23	11	11	86
순조대	3	2	1	2	2	10
현종 이후	8	1	0	0	0	9
계	24	31	24	13	13	105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西庫의 장서량이 크게 늘어났던 데에는, 물론 반사된 서적의 종수가 많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반사 서적의 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표 2>에 따르면 정조대에는 西庫로 반사되는 서적 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반면, 순조대 이

후에는 대량으로 반사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순조대 이후 西庫 장서량의 증가가 둔화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서적 반사 건수의 多寡가 西庫 장서량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西庫에 반사되는 서적의 수량이 많았다는 점은 다른 기관으로의 반사 내역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표 1>에는 西庫 외에 국가의 편찬·간행 서적들이 반사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서적이 반사된 국가기관으로는 승정원·홍문관·춘추관·예문관·성균관·의정부·6조·外史庫 등이 있으며, 주합루·봉모당·외규장각·이문원 등 규장각 소속의 다른 서적 소장처들도 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이들 기관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1건씩만 반사되었다. 즉, 內入件을 제외하면 한 기관에 다수의 서적이 반사되었던 사례는 西庫가 거의 유일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그렇다면 다른 국가기관 내지는 규장각 소속의 다른 서적 소장처들에 비해 西庫로 반사되는 서적의 건수가 유달리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西庫의 장서 목적이 다른 소장처들과는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서적의 반사 건수가 1~2건에 불과한 곳의 도서들은 해당 기관에서 비치하고 열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일 서적을 여러 건 소장하고 있던 西庫의 경우에는 ‘비치와 열람’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들이 함께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내각일력』이나 『일성록』 등을 보면 西庫 소장 도서들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서고의 서적들이 활용된 사례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23) 西庫에 반사되었던 서적들은 현재의 규장각 소장 도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 규장각 장서 중에서 西庫 소장본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 1>에서 정리한 도서 중에는 『飭諭武臣綸音』(奎2530)과 『耽羅賓興錄』(奎7779) 등 2종만이 藏書記를 통해 西庫 소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현재 규장각 도서 중에 ‘西庫’ 장서인이 찍힌 경우가 보이지 않는 점도 西庫 소장본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이를 볼 때 당시 西庫에는 별도에 장서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西庫 藏書의 활용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각일력』·『일성록』 등의 연대기 자료에는 西庫 소장 도서들을 여러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西庫 藏書의 활용 방식은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 각신들의 열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규장각은 정조대에 설치된 이후 학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서는 서적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규장각에서는 많은 도서들을 수집·편찬·간행하고 보관함으로써 각신들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이때 규장각에 속한 여러 소장처의 장서들 중 각신들의 연구 자료로 많이 사용된 책이 西庫에 소장된 도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1805년(순조 4) 4월 27일의 『승정원일기』 및 『내각일력』 기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上(순조)이 말하였다. “內府의 서적들을 각신들이 취하여 볼 수 있는가?”

朴宗薰이 대답하였다. “西庫의 책들은 때때로 취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閣古觀의 책은 請出牌가 있는 까닭에 내어주기를 청한 후에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주 청할 수가 없습니다.”<sup>24)</sup>

위 인용문에 따르면 西庫는 각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장서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중국본 도서를 보관하던 閣古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열람이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언제든지 열람이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서고는 소장 장서를 이용하기에 다른 소장처들보다 편리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각신들의 집무실인 摘文院에도 서적이 소장되어 있었지만,<sup>25)</sup> 앞 장의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문원에 반사되는 서적은 1건 정도에 불과하거나

24) 『承政院日記』 순조 5년(1805) 4월 27일: 『內閣日曆』 순조 5년 4월 27일 “上曰 內府書籍  
閣臣或取見乎。宗薰曰 西庫冊 則時時取見 而閣古觀冊 則有請出牌 故請出然後 可以取見  
而不敢間漫煩請矣。”

25) 『承政院日記』 순조 5년(1805) 4월 27일: 『內閣日曆』 순조 5년 4월 27일 “上曰 摘文院冊  
則藏於何處乎 宗薰曰 東二樓及行閣庫中 分藏矣。上曰 東二樓木櫟中所儲 何冊也。宗薰曰  
有經書及御定諸冊矣。”

나 아예 반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각신들의 열람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西庫는 서적의 반사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각신들의 열람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西庫는 규장각에 속한 여러 서고들 중에서 각신들이 연구를 위해 도서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西庫 소장 도서를 内入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다시 반사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먼저 西庫 도서를 内入한 사례로는 1803년(순조 3) 10월에 순조가 西庫 소장 『大典通編』 白紙件 1질을 内入하도록 한 것과<sup>26)</sup> 1807년 9월에 西庫에 있는 四書三經 각 1질을 가져와 내각에서 장서인을 찍어 들여오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sup>27)</sup> 또, 1804년 2월에도 순조는 西庫에 소장된 『國朝寶鑑』의 懸吐本을 찾아서 들여오도록 지시한 바도 있었다.<sup>28)</sup> 당시 西庫에는 『國朝寶鑑』 懸吐本이 없었기 때문에 순조의 지시는 실행되지 못했지만,<sup>29)</sup> 이를 통해 왕실에서 필요한 경우 西庫 소장 도서들이 内入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西庫 소장 도서를 다른 기관에 다시 반사한 사례를 보면, 1797년(정조 21) 윤6월에 『國朝五禮儀』와 『續五禮儀』의 新刊本 2질과 西庫 舊藏本 1질 등 총 3질을 宗廟·社稷·景慕宮齋室에 각 1질씩 반사한 일이 있었다.<sup>30)</sup> 1804년 12월에는 本閣, 즉 규장각에 있는 『詩經』과 『書經』의 현토본 각 1건을 경연 講官들이 사용할 교재로 보내고, 대신 西庫 소장 經書 중에서 紙本이 서로 비슷한 것을 가져와 빠진 규장각 장서를 보충하도록 하였다.<sup>31)</sup> 또, 1840년(헌종 6)에는

26) 『承政院日記』 순조 3년(1803) 10월 28일 “仍教近淳曰 內閣西庫所在大典通編 白紙件一件 内入 可也.”

27) 『內閣日曆』 순조 7년(1807) 9월 11일 “西庫所儲三經四書各一件 自內閣安寶以入事 下教.”

28) 『承政院日記』 순조 4년(1804) 2월 23일: 『日省錄』 순조 4년 2월 23일.

29) 『承政院日記』 순조 4년(1804) 2월 24일 “上曰 內閣亦無國朝寶鑑懸吐件耶. 宗薰曰 西庫與 內閣所峙國朝寶鑑 帖數頗多 而懸吐件則無之矣.”

30) 『日省錄』 정조 21년(1797) 윤6월 8일 “先是 命嶺營印進五禮儀·續五禮儀各五件. 是日 下壯紙件二件白紙件一件西庫舊藏壯紙件一件于內閣 安寶分藏于宗廟社稷景慕宮齋室 白紙件 則頒于成均館.”

31) 『內閣日曆』 순조 4년(1804) 12월 14일 “待教朴宗薰所啓 (중략) 臣意則其已懸墨吐之詩書 各二件 自本閣取來 以西庫經書中紙本相近者 換送 依前封鎖.”

화재로 소실된 景慕宮 望廟樓의 소장 도서 10여 종을 보충하는데 西庫의 장서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다.<sup>32)</sup>

한편,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서적들을 통해서도 西庫의 藏書들이 다른 기관으로 반사됐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의 반사 도서 중 『弘文館志』·『宮園儀』·『安窩集』·『壽齋集』·『江漢集』·『林忠愍公實記』·『車五山集』·『御定五經百篇』·『雅頌』·『梁大司馬實記』 등은 반사 대상에서 이문원이 빠져 있다. 하지만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이들 도서 중에는 ‘摛文院’ 장서인이 찍힌 책들이 있어서,<sup>33)</sup> 이들이 추후 이문원으로 반사됐음을 보여준다. 또, 『奎章閣志』의 경우에는 최초 반사 대상에 비변사가 없었지만, 현재 규장각 소장본 중에는 ‘備邊司’ 장서인이 찍힌 책이 있다.<sup>34)</sup> 최초 대상에서 빠졌던 기관에 추후 도서를 반사하려면 기준의 타 기관 장서를 이용해야 하는데, <표 1>을 볼 때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는 같은 책이 여러 건 있는 内入件과 西庫 장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内入件은 주로 국왕과 왕실의 필요를 위한 책임을 고려할 때 기관 반사용으로는 内入件보다는 西庫 장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西庫 서적을 개인에게 반사한 사례로는 1808년(순조 8) 1월에 『古文眞寶』를 하사받지 못한 下番史官에게 西庫에 소장된 『고문진보』 1건을 내려주도록 한 일이 확인된다.<sup>35)</sup> 이상과 같이 西庫의 서적들은 内入이나 타 기관, 개인

32) 『內閣日曆』 현종 6년(1840) 1월 20일 “向來景慕宮望廟樓火災時 所奉冊子 凌虛閣謾稟一  
帙外 盡入燒燼中 改建還安之日 冊子亦當依前奉序 而弘齋全書 則宙合樓所奉件中一件當移  
奉 純宗翼宗兩聖朝御製割付本 亦奉在宙合樓 當擇吉瞻出 展省錄卽正廟御筆 亦燒燼無餘  
而本閣御製欵幸有草本 亦當一體瞻出後移奉 外此曾前所奉十餘種冊子 則西庫亦有餘件 御  
製移奉時 當同爲奉去 依前奉安.”

33) 해당 도서들 중 ‘摛文院’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의 도서번호는 다음과 같다. 『弘文館志』(奎1899·1913), 『宮園儀』(奎14305·14306), 『安窩遺稿』(奎5944), 『壽齋遺稿』(奎5024), 『江漢集』(奎5904·5907·6512), 『林忠愍公實記』(奎1334), 『五山集』(규4810), 『御定五經百篇』(奎2416), 『雅頌』(奎3925), 『梁大司馬實記』(奎1496·2966).

34) 『奎章閣志』(奎12152)에 ‘備邊司’ 장서인이 찍혀 있다.

35) 『承政院日記』 순조 8년(1808) 1월 6일 “上曰 頃者古文眞寶頒給時 或有未及受賜者乎 宗  
薰曰 承旨閣臣 皆已受賜矣 上曰 下番受之否 宗薰問憲琦 憲琦曰 未之受賜矣 上曰 西庫  
所在古文眞寶一件 安寶賜給 可也 宗薰曰 頃日所須冊子 具未安寶矣 上曰 然則依向者所頒  
例給之 可也.”

에게 다시 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西庫에서 동일 서적들을 여러 건 소장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서고 소장 도서들이 經筵이나 書筵, 試講 등의 교재로 사용된 경우이다. 1779년(정조 3) 10월 5일에 정조는 西庫에 소장된 『綱目』 중에서 善本 2건과 서연에서 사용되는 懸吐本 『綱目』을 함께 가져와 대조하면서 新件, 즉 西庫 소장본에 혼토를 옮겨 적은 다음 檢書官들이 교정하여 들이도록 지시하였다.<sup>36)</sup> 서연 진강에서 사용하던 혼토본을 기준으로 西庫 소장 『강목』에 혼토 작업을 했다는 것은 이 책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조는 1799년 10월에도 專經試講의 교재로 사용할 正音 『周易』이 西庫 문관과 사역원에 없다는 보고를 받자, 규장각 直閣을 보내 西庫 장서 중에 마땅한 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sup>37)</sup> 또, 1817년(순조 17) 2월에는 효명세자와 성균관 입학 시 진강에서 사용할 『小學諺解』 4건을 西庫 장서 중에서 마련한 일이 있다.<sup>38)</sup> 이상의 사례들은 경연·서연·시강 등에서 필요한 교재가 미비할 경우 이를 대체할 서적으로 西庫 장서들이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西庫의 장서들이 다른 서적의 편찬·간행에 참고 자료로 사용된 경우로, 몇몇 사례들이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1781년(정조 5) 4월에 金鍾秀는 『名臣奏議』와 『國朝名臣奏議』의 편찬 결과에 대해 보고했는데, 그 내용 중에 西庫에 소장된 疏劄들을 『國朝名臣奏議』 편찬의 자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sup>39)</sup> 또, 1836년(현종 2) 10월에 趙寅永은 『同文彙考』의 속간 필요성을 제기

36) 『內閣日曆』 정조 3년(1779) 10월 5일 “上在昌德宮 閣內無事 以領籤 傳于金勉柱曰 西庫所藏綱目中好本二件 輿在儲時所講懸吐本 明朝寃出 移吐於新件 而多定能書吏 仍招檢書官從速校正以入。”

37) 『承政院日記』 정조 23년(1799) 10월 13일 “有聞曰 專經講時正音冊子 玉堂及譯院 只有春秋詩書四書 而無周易云矣。上曰 自譯院竝刻周易 則似好矣。書九曰 譯院則物力猝難辦此矣。上曰 西庫藏書中或有之乎 直閣出去考見 若有之 則雖一二件 推移先用於今番試講 可也。”

38) 『內閣日曆』 순조 17년(1817) 2월 22일 “入學時所用小學四件具諺解 以西庫件出給校書館之意 入稟矣。下教內 以西庫件爲之。”

39)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4월 5일 “提學金鍾秀進故事曰 名臣奏議 臣方承命編次矣。(중략) 我東奏議 既不續附於原編 而另作一編 則羅麗奏議 亦不必零瑣搜聚 只斷自本朝名之曰 國朝名臣奏議 恐合事宜 乞賜睿裁。國朝奏議 臣之曾所袁輯者 止於肅廟朝 而繼承西庫所藏先朝疏劄 一體纂次之命矣。肅廟朝以前奏議纂次者 不過掇拾於諸臣文集中故闕遺甚多 而御

하면서, 内閣·西庫·宙合樓 등에 소장된 4건의 『同文彙考』 중 西庫 소장본이 가장 완질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동문휘고』 속간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여 현종의 재가를 받았다.<sup>40)</sup>

이상에서 西庫 소장 장서의 활용 방식을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왕실 자료가 중심을 이루었던 봉모당·규장각이나 열람을 위해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한 閱古觀과는 달리, 西庫는 御製·御筆·璿源譜 등의 왕실자료와 御定書 및 경·사·자·집의 일반 도서들이 모두 소장되어 있었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했다. 바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규장각 내의 다른 서적 소장처들에 비해 西庫 소장 장서들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 5. 西庫 藏書의 관리

장서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서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규장각에서는 西庫를 비롯한 여러 도서 소장처들의 장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였다. 규장각의 장서 관리는 크게 奉審과 曝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奉審은 도서 소장처의 건물과 소장 도서의 이상 유무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奎章閣志』 初草本에는 규장각 소장 장서의 봉심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봄과 가을에 提學과 直提學, 直閣, 待教 등은 黑團領을 갖추어 입고 먼저 堂·閣의 앞에서 肅拜한 다음 司卷·領籤 등을 거느리고 書架의 도서들을 봉심한다. 『奎章總目』과 비교하여 書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다. 장마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로 봉심을 실시하여 비가 새는 곳은 즉시 修改한다.<sup>41)</sup>

府所藏先朝疏箚 則頗似該備 以此續彼 將不免詳略異例.”

40) 『內閣日曆』 현종 2년(1836) 10월 15일 “勸講入侍時 趙寅永啓曰 承文院舊在同文彙考 卽事大文字之最緊切者 曾在丙戌年間 因下令內入 其後未及奉出 而此書非外間恒有者 故每當事例可考之時 必也借來於籌司所在件 事甚苟艱矣. 内閣西庫有二件 宙合樓下層亦有二件云 西庫件最爲完帙 亦有續刊可合於援據 以此一件出給該院 以備掌故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위 인용문에 따르면, 西庫를 비롯한 규장각 소속 장서기구의 봉심은 정기적인 봉심과 부정기적인 봉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기적인 봉심은 매년 봄·가을에 실시하는 것으로 서적의 소장·관리 상태를 『奎章總目』과 비교·검토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규장각 각신들이 모두 참여하며 정해진 의복을 갖추고 肅拜를 실시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격식을 갖추고 엄숙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봄·가을의 정기 봉심 외에도 장마철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봉심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마로 인해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방지하면 건물 내부에 비가 새고 습도가 높아져서 소장 도서에 충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1차적인 봉심의 목적은 건물의 손상 유무를 파악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부의 서적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적에 대한 봉심과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西庫에 대한 봉심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내각일력』에서 규장각의 봉심 시행과 관련된 기사들을 추출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봉심 기사들이 奉謨堂 건물과 소장 서적을 봉심한 내용이었고, 西庫 건물 및 藏書에 대한 봉심 기사는 극히 적은 수만 확인되었다. 『내각일력』 기사 중 西庫 봉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內閣日曆』의 西庫 봉심 관련 기사

	일시	내용	비고
1	1780.04.21.	徐龍輔釐正西庫冊子	藏書 봉심
2	1780.10.17.	鄭民始·徐浩修·徐龍輔釐正西庫冊子	藏書 봉심
3	1784.05.21.	僉曰 觀其役處 似不至移奉 而皆有窩·西庫 勢將同時改革矣	건물 봉심·修改

41) 『奎章閣志』(奎734) 下篇, 「書策·藏書」 “每春秋 提學直提學直閣待敎 具黑圃領 先行肅拜 於堂閣之前 率司卷領籤 奉審每架書帕 以奎章總目較考 書籤有誤則正之。若經霖雨 別爲奉審 有滲漏處 隨卽修改。”[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奎章閣志』(영인본), 244면]

4	1796.07.22.	徐有渠 以奉審後 閣內諸處無頃 而皆有窩西北檐· <u>西庫</u> 西檐 依前滲漏之意 入稟	건물 봉심 · 修改
5	1798.04.15.	(전략) 五日奉審 連爲停止 則至二十五日 雖有後日次爲之之命 更稟舉行 閣內奉審後 皆有窩· <u>西庫</u> 書冊看審 (후략)	藏書 봉심
6	1802.08.11.	李晚秀以禮曹判書啓曰 (중략) 每年四孟朔 閣臣備二員 與承史各一人 奉審奉謨堂 兼審皆有窩· <u>西庫</u> (중략) 上曰 依爲之	봉심 규정 개정
7	1816.07.28.	臣等進詣書香閣御眞展 奉審無頃 奉謨堂閭內諸處 亦爲無頃 而 <u>西庫</u> 北簷二間許 爲風落松所壓傷 分付該曹 使之修改 何如 傳曰允	건물 봉심 · 修改
8	1817.08.07.	本閣啓曰 臣進詣書香閣奉審 則書香閣西南邊春舌 爲風落松所傷 瓦子脫落 <u>西庫</u> 南邊春舌椽木 及西成門南牆 亦爲摧傷 卽爲修改之意 分付該曹 何如 傳曰知道	건물 봉심 · 修改
9	1836.04.14.	(전략) 奉謨堂· <u>西庫</u> 所奉列聖御製 奉出然後 可以合祔粧續 明日大奉審時 閣臣入去奉出 (후략)	藏書 봉심
10	1836.07.14.	列聖御製 奉謨堂· <u>西庫</u> 奉安本 明日大奉審時奉安 (후략)	藏書 봉심
11	1836.09.08.	<u>西庫</u> 及宜春門庫所儲冊子 多有雨漏腐傷及蠹破 甚至有全無形體者 此則目錄中懸註付標何如 上曰 依此爲之	藏書 봉심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내각일력』에는 西庫 봉심 관련 기사가 총 11건 등장하는데, 봉심 실시에 관한 것이 10건, 봉심 규정에 관한 것이 1건이다. 그리고 봉심 실시 기사 중에는 장서 봉심 기사가 6건, 건물 봉심 · 修改 관련 기사가 4건이다. 위 기사들 중 1·2번의 경우 봉심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西庫의 책자를 정리했다.”는 내용을 볼 때, 봉심 과정에서 서적의 분류 및 배치 등을 다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3번 기사는 西庫를 봉심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봉심을 실시한 皆有窩와 함께 西庫 건물의 改葺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西庫도 봉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11번 기사 역시 봉심이라는 말은 없지만 西庫와 宜春門庫의 장서 중에서 손상된 서적의 처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봉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을 볼 때, 西庫의 봉심은 『규장각지』의 규정대로 정확히 시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실제는 봉심을 했지만 『내각일력』에 기사가 누락된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봉모당의 봉심 기사는 『내각일력』에

1,000여 건 이상 수록되어 있는 점, 정조대의 『내각일력』은 기사가 매우 충실히  
에도 西庫 봉심 기사가 10건에 불과한 점 등은 봉심 규정이 西庫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3〉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6번의 1802년(순조 2) 8월 기사이다. 당시  
예조판서였던 李晚秀는 奉謨堂 · 皆有窩 · 西庫 등의 봉심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매년 四孟朔, 즉 1 · 4 · 7 · 10월에 閣臣 2인과 承  
旨 · 史官 각 1인으로 하여금 奉謨堂과 皆有窩 · 西庫 등을 차례로 봉심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고, 순조가 이를 재가하였다. 이만수의 건의는 앞서 소개했던 『규  
장각지』의 봉심 규정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이는 당시에도 규장각 내 서적 소  
장처의 봉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만수의 건의에 따른 봉심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것이 〈표 3〉의  
7 · 9 · 10번 기사이다. 먼저 7번 기사를 보면, 7월에 봉심을 시행했고 書香閣 · 御  
眞殿 · 奉謨堂 · 西庫 등을 차례로 봉심한 점에서 이만수의 건의 내용과 부합한  
다. 또 9 · 10번 기사들은 『列聖御製』 개정을 위한 각 소장처의 『列聖御製』 출납  
을 大奉審 시에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大奉審’이라는 표현이 주목되는  
데, 기사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 내용상 西庫뿐만 아니라 奉謨堂 · 閣古觀 등  
규장각의 서적 소장처 전체를 봉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大奉  
審을 시행한 시기가 4월과 7월인데, 이는 이만수가 봉심 시기로 건의한 四孟朔  
과 일치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3〉의 7 · 9 · 10번 기사는 이만수의 건의에 따라  
개정된 봉심 규정이 실행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아서 1802년의 봉심 규정이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曝曬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적을 그늘에서 바람에 밀려 습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전통시대 서적 관리 방식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규장각에서도 소장  
도서들의 포쇄 규정을 마련했는데, 『奎章閣志』 初草本과 完成本의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다. 먼저 포쇄 시기는 초초본에서 매년 5월 단오 이후 7월 初伏 전까

지 세 차례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하였는데,<sup>42)</sup> 완성본에서는 매년 5월 단오 이후 7월 초순 전에 한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sup>43)</sup> 또, 포쇄 장소도 초초본에서는 ‘규장각 안의 바람이 잘 드는 곳’이라고 하였으나,<sup>44)</sup> 완성본에서는 移安閣(書香閣)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sup>45)</sup>

한편, 규장각 장서의 증가에 따라 포쇄 규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05년 4월에 순조는 당시 규장각 待教였던 朴宗薰에게 규장각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질문했는데, 그 중에 규장각 장서의 포쇄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박종훈은 규장각 장서의 수가 많아서 일시에 모두 포쇄할 수 없기 때문에 3~4월부터 포쇄를 시작하여 6~7월에 가서야 비로소 마치게 된다고 답하였다.<sup>46)</sup> 이는 앞서 『규장각지』에 기록된 ‘5월 단오 이후 시작’이라는 규정에 비해 1~2개월 정도 포쇄 개시 시기가 빠르다. 아마도 규장각 장서의 전체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5월 단오~7월 초순’의 기간만으로는 포쇄를 다 마치기 어렵게 되면서 시작 시기를 앞으로 당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포쇄 규정들이 西庫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내각일력』 기사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봉심 기사와 마찬가지로 『내각일력』에는 西庫 서적의 포쇄 기사가 상당히 드문데, 확인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42) 『奎章閣志』(奎734) 下篇, 「書策-曬書」 “今以五月端午後 七月初伏前 分三度擇日後 摘文院草記稟旨.”[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奎章閣志』(영인본), 255면]

43) 『奎章閣志』(奎82) 권1, 「書籍第五-曬書」 “凡曬書 每年一度 以五月端午後 七月初旬前 在直閣臣 臨時稟旨 擇日擧行.”[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奎章閣志』(영인본), 72면]

44) 『奎章閣志』(奎734) 下篇, 「書策-曬書」 “至奎章閣 房內迎風處曬 詫後 卷束匣之還奉龍亭 彩輿 安于奉謨堂 以次曬奎章閣閱古觀等書策 如儀.”[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奎章閣志』(영인본), 261면]

45) 『奎章閣志』(奎82) 권1, 「書籍第五-曬書」 “至移安閣 奉出曝曬 詫 還奉如儀 以次曝曬閱古觀書冊.”[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奎章閣志』(영인본), 73면]

46) 『內閣日曆』 순조 5년(1805) 4월 27일 “上曰 (중략) 內府書籍曝曬 何以爲之耶. 宗薰曰 卷帙甚多 势難一時曝曬 故自三四月爲始 至六七月 始訖矣.”

〈표 4〉『內閣日曆』의 西庫 曝曬 관련 기사

	일시	내용	비고
1	1795.08.27.	皆有窩西庫 曝曬書 自十六日爲始 是日畢 徐有渠檢書官成海應入參	포쇄 기간 명시
2	1798.04.15.	西庫書冊 多有新印者 頻頻曝曬 西庫狹窄 難於容旋 則晝香閣點火 從便曝曬後 還爲入置 兩待敎句管 而別定書吏 使之專當舉行	點火 포쇄
3	1819.08.23.	(전략) 東闕內庫書籍 且前曝曬 而西庫·宜春門庫所藏冊子 罷破腐傷甚多 亦有全無形體之件 (후략)	포쇄 과정에서의 도서 상태 점검

이상과 같이 『내각일력』에는 西庫 포쇄와 관련된 기사가 3건 정도 실려 있는데, 수는 많지 않지만 西庫 포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 1번과 3번 기사는 포쇄 시기가 8월로, 앞서 검토했던 ‘3·4월 시작, 6·7월 종료’의 규정 기간 밖에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더라도 필요와 상황에 따라 포쇄 시기가 조정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1번 기사는 포쇄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皆有窩와 西庫의 서적을 포쇄하는 데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이 소요되었다. 西庫 曝曬 목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1795~1802년 사이 西庫의 장서량은 27,798책이었다. 여기에 皆有窩의 중국본 서적은 1781년 시점에서 약 20,000책이었으므로 1795년에는 이보다 늘어났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1번 기사를 통해 12일 동안 최소 50,000책 정도의 서적을 포쇄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기사는 西庫 서적 포쇄에서 바람에 말리는 舉風 외에 다른 방식이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즉, “書香閣에서 불을 붙여서 편의에 따라 포쇄한 후 다시 西庫로 가져와 보관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點火’는 방에 불을 떼서 온도를 높인 다음 그 안에 책을 두어 습기를 말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舉風을 하기에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신 點火의 방식을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47)</sup>

47) 지방의 外史庫에서 소장 서적을 포쇄할 때에도 날씨가 좋지 않아 거풍이 어려운 경우 온돌방에 불을 떼서 포쇄를 한 사례들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계영,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績과 保存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39-148면 및

마지막으로 3번 기사는 포쇄 과정에서 서적의 상태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종이 슬거나 부페된 서적들을 확인했으며 손상이 심한 책들은抄出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내역을 西庫 서적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차후의 봉심·포쇄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西庫와 宜春門庫 서적을 함께 포쇄한 것은 당시 宜春門庫가 西庫의 別庫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西庫 藏書 관리에 대한 각종 규정들과 연대기에 기록된 관련 기사들을 검토해 보았다. 西庫 장서는 규장각의 연구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자산이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연대기의 기록만을 볼 때는 이러한 규정들이 잘 실행되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봉심·포쇄를 실시한 내역이 연대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그리고 둘째는 어제·어필 등 국왕·왕실 자료를 소장한 奎章閣(奎章閣 1층)과 奉謨堂의 위상이 다른 서적 소장처보다 높았기 때문에, 규장각의 서적 관리 역시 이곳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상대적으로 西庫 등 다른 소장처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규장각의 조선본 도서 소장 기구였던 西庫의 운영과 서적 관리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제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西庫는 1776년 규장각 창설 초기에 이미 조성됐으며, 이때에는 經·史·子·集의 四部 체계로 소장 도서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도서 분류 체계는 1791~1792년 西庫 건물 移建 이후에 일부 수정되어 ‘御定類’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편, 1790년대 이후 서고 소장 도서의 급증으로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1799년에 소장 도서 일부를 宜春門 傍舍(宜春門庫)로 이관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부 도서를 이관하였다. 즉, 1799년 이후의 西庫는 원래의 西庫 건물과 別庫 역할을 담당한 宜春門庫로 이원화되어 운영됐다고 할 수 있다.

『내각일력』·『일성록』·『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자료에는 정조대 이후 국가에서 편찬·간행한 서적들의 西庫 頒賜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西庫에는 1781년부터 1890년까지 총 105종의 서적이 반사되었고, 반사 건수는 모두 1,955건이다. 西庫로의 서적 頒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반사되는 수량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105종의 반사 서적 중 10건 이상 반사된 경우가 50종이며 50건 이상 반사된 사례도 13종에 달한다. 이는 타 기관으로의 반사 수량이 특별한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1건에 그쳤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타 기관 도서들이 대부분 해당 기관의 비치·열람용이었던 것에 비해 西庫 도서는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西庫 도서의 활용 방식은 ① 규장각 閣臣들의 열람, ② 內入 또는 다른 기관·개인에게 다시 반사, ③ 經筵·書筵·試講의 교재로 사용, ④ 다른 서적의 편찬·간행에 참고 자료로 이용 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②~④번은 西庫 서적에만 적용되는 활용 방식이었으며, 서고에 대량의 서적이 반사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西庫 藏書는 규장각의 연구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자산이었으므로, 규장각에서는 이 장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였다. 西庫 장서의 관리는 서적의 이상 유무를 살피는 奉審과 서적의 습기를 제거하는 曝曬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연대기에는 서고 장서에 대한 奉審·曝曬 기록이 매우 드물어서 관련 규정들이 잘 실행되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봉심·포쇄를 실시한 내역이 연대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그리고 둘째는 어제·어필 등 국왕·왕실 자료를 소장한 奉謨堂이나 奎章閣(奎合樓 1층)의 위상이 西庫보다 높았기 때문에, 규장각의 서적 관리 역시 이곳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상대적으로 西庫 등 다른 소장처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제어 : 西庫, 규장각, 조선본 서적, 奉審, 曝曬

투고일(2015. 5. 11), 심사시작일(2015. 5. 20), 심사완료일(2015. 6. 3)

### 〈Abstract〉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eogo(西庫) of Kyujanggak

Kang, Moonshik \*

Seogo(西庫) was one of the archives belonged to Kyujanggak, which was for the books compiled and published in Joseon dynasty. It was established at 1776. At first the book housed at Seogo were arranged according to the four parts classification. And after 1792 a new item, the materials compiled by king(御定類) was added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As the number of books at Seogo increased rapidly in the 1790s, there was a lack of space for books at Seogo. So in 1799, some of the books of Seogo were moved to the buildings beside the gate of Uichun(宜春門).

From 1781 to 1890, 105 kinds of books(1,955 sets) were added to Seogo by the order of kings. According to the chronicles such as *Ilseongrok*(日省錄) and *Naegakilryeok*(內閣日曆), there were four ways of using books of Seogo; materials for Kyujanggak Gaksin(閣臣)'s research, books for bestowing on officials, teaching materials for the kings and crown princes and references of compiling other books.

In *Kyujanggakji*(奎章閣志) there were two regulations as the ways for management of the books of Seogo. One was examining the condition of books carefully(奉審) and the other was airing books(曝曬) for taking moisture out of the books. But the articles of examining and airing the books of Seogo were rare in the chronicles. I guess it shows two possibilities. First, many cases of examining and airing books were not recorded in the chronicles. Second, the status of Bongmodang(奉謨堂) or Juhaplu(宙合樓), which were archives for the materials of kings and royal family were higher than that of Seogo. So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book management of Kyujanggak was focused on Bongmodang and Juhaplu, while the concern over the management of Seogo was

---

\* Curat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ively low and examining and airing the books of Seogo were not carried out regularly according to the rules.

**Key Words** : Seogo(西庫), Kyujanggak, the books compiled and published in Joseon dynasty, examining the condition of books carefully(奉審), airing books (曝曬)